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42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2일  
교 육 위 원 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2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
(2019년 9월 2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민종 감사관)

1. 제안이유

○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규정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시민감사관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'1회에 한하여'를 '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'으로 수정(안 제4조)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842호로 제출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 규정을 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현황

-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(민원, 부패, 위법·부당 행정행위 및 공무원의 권력 오·남용 등)을 접수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요 위법사항을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권고를 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 중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’(이하 ‘비상근시민감사관’이라 함)으로 총 41명을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.<sup>2)</sup>

1)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·보건·환경·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.

현행 법령에서 ‘시민감사관’ 또는 ‘청렴시민감사관’이라는 용어를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‘외부전문가 등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.

2) 비상근시민감사관의 실적에 대한 자료는 [붙임1] 참고.

[표] 비상근시민감사관 현황(2019.7.19. 기준)

분 야	초임	재임
학 사	11	5
시 설	1	3
법 률	5	0
회 계	8	8
계	25	16

### 나. 연임 횟수 제한의 확대에 대한 검토

-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은 비상근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'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'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동 규정이 비상근시민감사관에 대해 연임사항을 규정한 것은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구성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

- 이러한 비상근시민감사관의 연임규정과 관련해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은 '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'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(감사관-7921, 2019.6.28.) 비상근시민감사관의 연임 횟수를 현행보다 2회로 완화할 경우 비상근시민감사관이 최대 4년간 축적한 감사 경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

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설, 회계 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비상근시민감사관의 경우 기존 우수인력의 임기 만료 시 감사 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임 횟수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-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동 개정조례안의

입법예고 기간 중 임기 연장이 현재 비상근시민감사관을 위한 특혜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과 능력 있는 감사관이 두루 선발되어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함에도 동 조례에는 감사관의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(조례안 별첨3 참고).

- 비상근시민감사관의 횟수를 1회로 할 것인지,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업무의 전문성 등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,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참고로 현재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·도 교육청의 경우 강원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·도 교육청에서 '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'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3)</sup>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V. 토론요지 : 없음.

#### 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3) 강원도교육청의 「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」 제5조제1항에는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이 임기만이 규정되어 있음.

제5조(임기)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감사관 운영 규정」 제4조제2항은 '두 차례만 연임'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학부모감사관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에서 두 차례 연임을 하여도 총 임기가 3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비상근시민감사관의 총 임기 4년보다 짧음.

제4조(구성·임기 및 자격 등) ② 학부모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전국 시·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임기와 연임관련 현황은 [붙임2] 참고.

Ⅶ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고,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----- ----- ----- <u>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